

반테러 세관-무역 파트너십(C-TPAT)
최저 보안 기준
미국 및 외국 항만청 및 터미널 운영자(MPTO)

C-TPAT 에 대한 자격

미국 기반 MPTO 에 대한 자격

- 미국에서 활동중인 항만 및 터미널 운영자(MPTO).
- 해외 지역으로부터 도착하는 화물 선박을 취급해야 한다.
- 미국에 직원이 있는 사무실을 두고 있다.
- 연방 해양청(FMC) 해양 터미널 운영자(MTO)의 6 자리 FMC MTO 번호를 소지한다.
- C-TPAT 의 책임이 있는 화물 보안 취급자를 두고 있다.

외국 기반 MPTO 에 대한 자격

- 연방 세관 및 국경 수비대(CBP)로부터 C-TPAT 에 가입하도록 초청을 받은 해외에 위치한 활동중인 MPTO.
- 미국으로 출항하는 화물선을 취급해야 한다.
- C-TPAT 의 책임이 있는 화물 보안 취급자를 두고 있다.

서문

미국 및 외국의 항만청 및 터미널 운영자(MPTO)는 다음의 C-TPAT 최저 보안 기준에 근거하여 그 보안 방식에 대하여 종합적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C-TPAT 는 국제 공급망 및 보안 방식의 복잡성을 인식하며, 위협에 근거하는 보안 대책의 적용 및 구현을 인정합니다.¹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C-TPAT 구성원의 사업 모델, 항구의 지리적 위치, 항구에서 취급되는 물자, 항만청 및 터미널 운영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약관에 근거하여 유연성과 보안 계획의 맞춤화를 허용합니다.

C-TPAT 는 또한 항구 내에서 입주자로서 작업하는 터미널 운영자에 관하여 항만청과 터미널 운영자 사이의 독특한 역할 및 관계를 인식합니다. C-TPAT 목적상, 터미널 운영자는 물리적 영역 내부에 C-TPAT 보안 기준을 구현해야 하며, 터미널 운영자의 통제 및 책임 영역 내부에 프로세스들을 구현해야 합니다. 항만청이 특정 프로세스 또는 해상 운송업체, 터미널 운영자, 독립 계약자와 같은 공급망의 요소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MPTO 는 이러한 사업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관련 있는 보안 조치가 마련되며 항구 전체에 걸쳐 준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C-TPAT 는 국제 선박 및 항구 보안법(ISPS) 그리고 해상 운송 보안법(MTSA) 하에서 도출되는 정해진 보안 명령에 이미 적용받음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선박 및 시설 보안 요구조건들을 중복하는 것은 C-TPAT 의 의도가 아니며, 오히려 C-TPAT 는 ISPS 및 MTSA 기반 위에 구축하는 것을 추구하며, 국제 공급망 전체에 걸쳐 전반적인 보안을 강화시키는 추가의 보안 조치 및 방식을 요구합니다.

ISPS 및 MTSA 준수는 C-TPAT MPTO 필요한 선행조건이며, 해당되는 ISPS 법의 요구조건을 준수하는 터미널만이 C-TPAT 구성원에 의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물리적 출입

¹ 항만 터미널 운영자(MPTO)는 사업 모델에 근거하여 그 오퍼레이션 내에서 보안 취약점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확인이 가능하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합니다(즉, 물량, 들어오는 선박 및 화물의 국적, 미국 해안경비대가 들어오는 선박/화물에 대해 보안이 불충분하다고 파악한 외국 항구들, 공개 출처 정보를 통한 보안 경우, 과거의 보안 사건 등).

통제 및 물리적 보안 조항들은, 그러한 선박 또는 시설에 의해 ISPS 법 및 해양경비대 법규를 준수해야만 ISPS 규제 대상의 선박 및 항구 시설에 대해 만족됩니다.

CBP 및 외국 관세 이니셔티브

귀하는 C-TPAT 구성원으로서 화물 및 컨테이너 보안을 강화시키는 CBP 의 종합 전략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전략에 따른 다른 이니셔티브들에서는 무역법 24 시간 규칙, 비침입성 검사 기술 및 컨테이너 보안 이니셔티브(CSI)의 활용 그리고 보안 화물 이니셔티브(SFI)가 포함됩니다.

-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의 부담의 많은 부분이 운송업체와 수입업체에게 부과되지만, C-TPAT MPTO로서 귀하의 역할은 필요에 따라 이러한 단체들과의 전적인 협력을 요구하며, 그 내용은 검사, 무역 자료의 적기 제출, 화물/컨테이너 이동 및 고위험도 타겟팅으로 구성됩니다. CSI 조건을 가진 국제 항구에서 운영하는 MPTO 인 경우, 공급망 보안 사안들을 의논하며 보안 및 타겟팅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포럼으로서 CSI 조건의 팀장과 규칙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관세청 공급망 프로그램의 참가/인증**
관세청이 관리하는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에서 인증을 취득한 외국 기반의 MPTO 들은 자신의 사업 파트너에게 참가의 상태를 지시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 요구조건

MPTO 는 항구나 터미널의 제약 반경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약을 맺은 서비스 제공자의 선별을 위한 승인가능한 절차를 작성했어야 합니다. 또한 MPTO 는 고객이 합법적 사업으로 비치는지 또는 보안 위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는 재무상의 건전성 사안들 외에도 신규 고객에 대한 선별 절차도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안 절차**
MPTO 는 신규 고객 선별을 위한 서면 또는 웹 기반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요인이나 방식을 파악하며 그 존재는 MPTO 에 의한 추가의 감시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선박의 선적 이전에 의심이 가는 고객의 컨테이너 외부에 대한 세밀한 물리적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추가의 검토를 위한 CBP 또는 다른 관할 기관들에 대한 조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SI 조건을 가진 국제항에서 운영하는 MPTO 인 경우, 이러한 조회는 CSI 팀장은 물론 지역의 기관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CBP 는 MPTO 와 파트너십으로 협력하여 관련 있는 요인, 방식 또는 위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파악할 것입니다.

MPTO 는 계약 서비스 제공자가 C-TPAT 보안 권장 사항들을 약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약정에 대한 규칙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보안

MPTO 보호 하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무결성 및 파기 검출 조치를 유지함으로써, 허가 받지 않은 자가 시도하는 내부 음모 또는 변형(허위 컴파트먼트)에 의한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화물 선적, 취급 및 처리로 구성되는 운영 절차 동안, MPTO 는 컨테이너 육안 검사를 시도함으로써 침해 여부를 검출해야 합니다.

- **컨테이너 보관**

MPTO 는 보호 대상의 컨테이너를 보안이 확보된 위치에 보관하여 무단 출입 및/또는 조작을 방지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나 컨테이너 보관 위치에 대한 침입을 적절한 지역의 경찰관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CSI 조건이 있는 국제항에서 작업하는 MPTO 는 CSI 팀장에게도 그러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장기간 동안 보관이 허용된 화물은 그 내용물을 기재하는 문서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컨테이너는 HAZMAT 및 임시 보관 지정에 의하여 분리되어야 합니다. MPTO 들은 화물/컨테이너의 보관 지역을 규칙적으로 점검하는 관행을 구현해야 합니다. 빈 컨테이너는 비어 있으며 또한 허위 컴파트먼트가 없는지 확인하는 점검을 거쳐야 합니다.

- **용기 봉인**

손상된 봉인을 파악하여 미국 세관 및 국경 수비대, 적절한 외국 기관 또는 CSI 조건이 있는 국제항에서 작업하는 MPTO 의 경우는 CSI 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MPTO 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육안 검사를 수행하여 PAS ISO 17712 최고 보안 인증을 컨테이너에 부착하도록 하며 모든 변형이나 컨테이너 침해를 검출해야 합니다.

물리적 출입 통제

MPTO 는 화물 시설에 대한 무단 출입을 방지하며 사원, 서비스 제공자 및 방문자의 통제를 유지함으로써 출입 통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출입 통제에는 모든 출입 제한 지역에서 모든 사원, 서비스 제공자(특히 트럭 기사), 정부 관리 및 납품업체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항구 및 터미널 직원과 서비스 제공자는 합법적 사업을 수행하는 항구의 위치에 대한 출입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의 물리적 출입 통제 조항들은 해당 선박이나 시설에 의한 ISPS 법 및 MTSA 법규의 준수가 이루어질 때 ISPS 규제 대상의 선박 및 항구 시설에 대해 만족됩니다.

- **보안 인원**

MPTO 는 출입 게이트를 경비가 지키도록 해야 하며, 민감한 지역 그리고 화물을 취급하고 보관하는 지역을 감시하는 순회 순찰을 포함해야 합니다.

MPTO 보안 인원들은 항구에 지정된 정보 경찰 인력 그리고 선박 보안 인원과 규칙적인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시설 보안 관리(FSO)가 MTSA/ISPS 에 의거하여 지정된 경우, FSO 는 보안과 관련된 모든 C-TPAT 의 사안을 위한 MPTO 의 연락 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 **사원**

신원 파악 및 출입 통제 목적을 위한 사원 신원파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원의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에 대한 출입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회사 관리자나 보안 담당자는 사원, 방문자 및 납품업체의 신분증 배지에 대한 발급과 취소를 충분히 통제해야 합니다. 출입 통제 장치(예: 열쇠, 키카드 등)의 발급, 제거 및 변경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 **수색**

터미널을 출입하는 모든 개인과 차량은 경비가 있는 게이트로 출입해야 하며, 수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수색의 권리는 지역법, 연방법 및 노동법의 권리에 의거해야 합니다.

- **방문자 / 납품업체 / 서비스 제공자**

방문자, 납품업체, 정부 관리 및 서비스 제공자는 MPTO 시설에 도착 즉시 문서화 목적을 위해 사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방문자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료되지 않은 운전 면허증이나 정부에서 발급한 아이디 카드 등의 신분증을 체크하여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자, 납품업체 및 서비스 제공자는 또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항구 내의 어디로 향하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트럭 기사)를 동반하는 승객들에게도 항구 진입에 대한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방문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에스코트를 위하여 승인된 MTS/ISPS 보안 계획이 설명하는 조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임시 신분증이 포함되며 이를 따라야 합니다. 미국 MPTO의 경우, 일단 전적으로 구현된 다음에는, 운송 작업자 신분증(TWIC)의 제공을 통하여 유효한 신원 확인의 기준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증 요구 및 제거**

무단 출입자나 신원 미확인자에 대한 파악, 신분증의 제시 요구 및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박에서 밀항자나 도망자로 보이는 개인을 접하게 되면, 국내 항구의 CBP 인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국제 위치에서 작업하는 경우, 외국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CSI 조건을 가진 항구에서 작업하는 경우 CSI 팀장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인력 보안

해당 위치에 대한 법규의 준수에 있어서, 장래의 사원을 선별하며 기존 사원을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승인 가능한 절차를 서면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전적으로 구현된 다음에는, 운송 작업자 신분증(TWIC)을 제공하여 유효한 신원 확인의 기준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 **채용 전 확인**

직장 경력과 참조인 등 신청서 정보는 채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배경 점검/조사**

해외 법규와 일치하도록, 장래 사원에 대한 배경 점검 및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단 고용되면, 규칙적인 점검 및 재조사를 원인 및/또는 사원 직책의 민감성을 기준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해고 절차**

회사에서는 해고된 사원에 대한 신분증, 시설 및 시스템의 접근을 취소시키는 절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절차상 보안

화물의 운송, 취급, 통제, 방출 및 보관과 관련 있는 프로세스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가 받지 못한 인원이 항구나 터미널 시설 및 컨테이너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컨테이너에 사람을 숨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출발항에서 오는 컨테이너와 선박을 받는 MPTO 들은 한국에 선박과 컨테이너 도착 시 이러한 특정 위험을 해결하도록 마련된 절차를 구현해야 합니다. CBP 는 특정 항구나 지리적 위치에서의 사람의 은폐나 밀항의 높은 위험을 알게 될 때 MPTO 에게 알리게 됩니다. 미국 내의 경우, 불법적이거나 상당히 의심스러운 활동이 검출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CBP 및/또는 기타 적절한 경찰 기관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적절한 경찰 기관과 지역 CSI 조건에 해당되는 팀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화물 통제**

화물은 그 배송시 수탁자나 대리인에게 검수해야 합니다. 배송 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적하목록 차이 보고서를 완료하여 CBP 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화물/컨테이너의 부적절한 전환이나 배송 시, MPTO 는 CBP 또는 해당 외국 기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선적 및 인수**

도착하는 화물은 화물 적하목록의 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해야 합니다. 화물은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중량, 라벨, 표 및 지수를 표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은 구매 또는 배달 주문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을 배달하거나 인수하는 기사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화물을 인수하거나 방출해야 합니다.

- **컨테이너 개봉**

세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개봉하는 경우, 컨테이너 도어는 검사의 완료와 동시에 즉시 닫고 잠근 다음 재봉인해야 합니다. 컨테이너에 부착하는 대체용 봉인은 그 내용을 원래 봉인을 제거한 이유와 함께 선적 서류에 기록해야 합니다. MPTO 는 본 문서의 컨테이너 보안 질에 요약된 내용에 따라 봉인 통제를 구현해야 합니다. 대체용 봉인은 PAS ISO 17712 최고 보안 봉인이어야 하며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컨테이너/화물 방출

도착하는 컨테이너가 즉시 CBP 에게 제공되도록 CBP 와 협조하는 것은 C-TPAT 구성원의 주요한 약정 사항입니다. MPTO 는 미국의 상행위를 위해 방출되기 전에 그 검사를 위해 CBP 에 의한 검사를 위해 지정되는 컨테이너를 따로 두는 책임을 실행해야 합니다. CBP 에 의한 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들은 CBP 가 명시한 장소로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배송되어야 합니다. CBP 의 승인 없이 MPTO 에 의하여 방출되거나 잘못 배송되는 컨테이너들은 C-TPAT 프로그램에 대한 정지나 제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선박 자동화 적하목록 체계**

C-TPAT 의 구성원인 미국 MPTO 는 자동화 적하목록 체계(AMS)에 참가해야 합니다. AMS 참가는 화물/컨테이너 보류 및 방출에 대한 중요한 통신 기능을 MPTO 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출구 게이트에서, 미국 MPTO 는 AMS 에 속한 각 컨테이너를 조회하여 그 컨테이너가 CBP 의 방출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 교육 및 인지도

MPTO 는 항구, 선박 및 해상 화물에 대한 보안상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 인지도를 고취시키는 보안 인지도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사원들은 일 년에 한 번 MPTO 가 보안의 우려나 사건을 보고하도록 마련한 절차를 교육 받아야 합니다. 보안 및 위협 인지도에 관한 연례 재교육을 개발하여 모든 사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항구 보안, 선박 및 화물 무결성의 유지, 내부 음모의 파악 그리고 출입 통제의 보호에 관한 교육을 사원에게 1 년에 1 회 제공해야 합니다.

물리적 보안

MPTO 는 허가 받지 않은 인원의 항구나 선박에 대한 진입을 방지하며, 화물이 MPTO 의 보호 하에 있는 동안 화물 운반의 조작을 방지하는 확인 가능한 서면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해당 선박이나 시설의 ISPS 법 및 MTSA 규제 준수에 이르면, 본 기준의 물리적 보안 조항들은 ISPS 규제 대상의 선박 및 항구 시설에 대하여 만족됩니다. MPTO 는 다음의 C-TPAT 물리적 보안 기준을 해당되는 경우 포함시켜야 합니다.

- **울타리**
주변 울타리는 항구 전지역 그리고 화물 취급 및 보관 시설, 컨테이너 부지 및 터미널 주위의 지역을 둘러싸야 합니다. 모든 울타리는 무결성과 손상 여부를 규칙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 **게이트 및 초소**
차량 및/또는 인원이 출입하는 게이트에는 반드시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시하고 보안을 확보해야 합니다.
- **주차 및 개인 차량**
터미널 지역으로의 밀수품 반입 또는 터미널로부터의 반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 승용차에 의한 터미널 진입은 가능한 한 제한해야 합니다.

개인 승용차에 대한 진입이 허용되는 경우, 화물 취급 및 보관 지역 그리고 선박 내부나 주위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합니다. 캡/콘도가 달린 트럭은 항구에 두는 동안에는 항상 잠긴 상태를 유지하여 도망자나 밀항자가 항구 외부로부터 숨어들어 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건물 구조**
건물은 불법 출입에 견디는 자재로써 건축해야 합니다. 구조물의 무결성은 규칙적 검사와 수리로서 보수유지해야 합니다.
- **잠금 장치 및 열쇠 통제**
모든 외부 및 내부의 창문, 게이트 및 울타리는 잠금 장치로써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리 및 보안 인원은 모든 자물쇠와 열쇠의 발급을 통제해야 합니다.
- **조명**
다음 지역을 포함하여 시설 내외에는 반드시 충분한 조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출입구, 화물 취급 및 보관 지역, 울타리 선, 주차 지역. 선박이 항구나 부두에 있을 때 주변을 충분히 조명해야 합니다.
- **알람 장치 및 비디오 감시 카메라**
운송업체의 위험 평가에 의하여 적절하다고 결정된 위치에는, 경보 장치와 비디오 감시 카메라를 활용하여 부지를 감시하고 항구, 터미널 시설, 선박, 화물 취급 및 보관 지역에 대한 무단 출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보 기술 보안

정보 기술 보안(IT)은 무역의 경향이 점차 페이퍼리스 환경으로 진화함에 따라 공급망 보안의 주춧돌 역할도 수행합니다. 보다 자동화된 시스템의 사용을 통하여, 문서 사기 및 내부 음모를 저지르는 기회도 많아지게 됩니다. IT 보안 지침은 암호 보호와 사용자 책임을 포함하며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만약 외부의 기술자나 프로그래머가 내부 시스템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인원들은 감시를 통해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암호 보호**
자동화 장치는 규칙적인 암호의 변경을 요구하는 개인적으로 지정된 어카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IT 보안 정책, 절차 및 표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교육을 통하여 사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부적절한 출입, 부정 조작 또는 사업 데이터의 변조 등 IT의 남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모든 시스템의 위반자는 그 남용에 따른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보안 평가, 대우 및 개선

MPTO 및 CBP 모두 보안 평가와 개선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며, 구현된 특정 절차의 경우 앞으로 약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우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보안의 단점이나 보안의 침해가 파악되는 경우, MPTO 및 CBP 관리들은 그러한 와해를 초래한 이유를 확정하고 상호 합의하는 구제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보안 사고가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거나 보안의 약점이 심각한 구제를 요하는 경우, CBP 본부 관리들은 MPTO의 중역과 모임을 통하여 그러한 우려를 상의한 다음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파악합니다.

비준수

CBP는 C-TPAT 프로그램의 보안 기준에 대한 비준수를 이유로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MPTO를 정지 또는 취소시킬 권한이 있지만, 이러한 권한은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만 행사됩니다.